



: 2020-09-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74167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회사
피 고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소송의 취하절차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건에 관하여 취하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 2020-09-08

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각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부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너지·화학 회사로서, 2018. 11. 27. 미국 내 배터리 공급 사업을 위하여 미국 델라웨어 주에 미국 법인인 원고 B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B회사는 원고 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자회사이다(이하 원고 B회사를 '원고 자회사'라 한다).

2) 피고는 석유화학 사업부문을 기반으로, 정보전자소재, 전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선행 분쟁관계¹⁾

1) 피고는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의 등록특허 D(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하고, 상세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에 대한 특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합130851, 이하 '선행 민사사건')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2. 21. 피고(선행 민사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전부

1)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상세한 분쟁의 경과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2014. 4.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2011. 12.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2012. 8. 9. 무효 심결(특허심판원 E 사건)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위 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3. 4. 11.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법원 2012허8188 판결).

피고는 2013. 5.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16항 중 일부 청구항의 내용을 정정하고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특허법원 2012허8188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의 정정심판청구가 인용되자(특허심판원 F 심결), 원고 회사는 위 정정심결에 대하여 정정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6. 11. 이를 기각하였다(특허심판원 G 심결). 원고 회사는 위 정정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4허4968 사건)], 대법원은 2013. 11. 14.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정정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위 특허법원 2012허8188 판결을 파기환송였다((2013후884 사건, 환송 후 특허법원 2013허9614 사건), 이하 '이 사건 특허무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무효사건의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이던 2014. 10. 29.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피고와 원고 회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2011년 이후 계속된 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2')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피고와 원고 회사는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2. 본 합의서 체결 즉시 원고 회사는 특허심판원 H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G 정정무효심판 및 특허법원 2014허4968 심결취소의 소를, 원고 회사가 특허심판원 E 무효심판을 취하하는 즉시 피고는 특허법원 2013허9614 심결취소의 소를 각각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위 소송 및 심판의 취하에 대해 동의한다.
3. 피고와 원고 회사는 기존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무효 쟁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와 원고 회사는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
5.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라.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취하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특허를 말한다. 합의서 원문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대상특허'로 기재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특허무효사건의 심결취소의 소를 취하하였고(특허법원 2013허9614 사건), 원고 회사는 2014. 10. 30. 이 사건 특허의 무효심판청구(E), 이 사건 특허 정정무효사건의 심결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특허법원 2014허4968).

마. 피고의 미국에서의 소 제기

피고는 2019. 9. 26. 원고들이 피고의 미국 특허(특허번호 I, J, K, 이하 '이 사건 미국 특허'라 한다)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조사신청을 제기하고(별지1 목록 1항 기재 쟁송), 같은 날 원고들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별지1 목록 2항 기재 쟁송)을 제기하였다(이하 피고의 이와 같은 소제기 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쟁송' 혹은 '이 사건 제소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

피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표시된 것처럼, 이 사건 합의는 '2011년 이후 계속된 ceramic coating(무기물 입자 코팅) 분리막에 관한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또 이 사건 합의서 1항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는 '양사 사업의 시너지창출을 위한 협력 확대 공동으로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특허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국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제소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상호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국내 특허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국외에서 분쟁이 생길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문구에 '국외에서'가 포함된 것은, 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인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제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와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I) 및 그 후속 특허(J, K)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제소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부제소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의 취하절차 이행의무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소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미국 법원에서 이 사건 합의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더라도 국내법상의 부제소 합의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효력 인정의 범위와 내용을 알기 어렵고, 미국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상세한 절차와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제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취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권리 구제 방법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송의 취하절차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의무의 부과를 구한다.

또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로 인하여 미국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별지 5 기재 표와 같이 변호사비용 6,513,191,523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이 사건 합의의 협력의무나 부제소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이거나, 이 사건 합의 후 악의적으로 부당한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소행위로 입은 손해 상당액 6,513,191,523원 중 일부로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취하절차 이행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하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



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0055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쟁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쟁송이 취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쟁송의 소취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즉 이 사건 쟁송이 제기된 법정에 이 사건 쟁송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쟁송이 취하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송의 소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사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사실행위로서의 취하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에 대하여 미국 법정에서 이 사건 쟁송에 대한 소취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그 목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피고의 소취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또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작위 의무인 부제소 의무를 위반하여 소제기를 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



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구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구하는 청구의 내용은 결국 이 사건 쟁송에 대한 소취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청구의 목적이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의 청구'에 해당하고, 민법 제389조 제3항이 아니라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소행위가 이 사건 합의 중 협력의무위반, 혹은 부제소 의무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이라거나, 부제소 약정을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부당한 소를 제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국특허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에 한정되는 것인지, 이 사건 미국특허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되는 특허를 '대상 특허'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대상특허가 이 사건 특허임은 일응 문언상 명백하다("2011년 이후 계속된 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또 당사자의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대상 특허, 즉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의 의미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이 사건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중 '관련하여'를 실제로는 '관련한 미국 특허'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³⁾. 이 사건 특허가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허로 인한 국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4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외에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합의 당시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미국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중략)...국내/국외에서... (중략)..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외'를 명시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고 회

3)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을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해외 특허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특허에 대응하는 국외 특허 현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사로서는 피고와 국외에서 발생할 분쟁까지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응한 동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가 2014. 10. 14. 피고에 발송한 합의서 초안 전문에는 대상특허가 특정되지 않은 채 '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특허기술'로, 4항의 부제소 의무에 대하여 '특허기술 및 특허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과 관련하여'라고 기재되었던 사실, ②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합의서 초안을 수정하여 2014. 10. 15. 원고 회사에 합의서 전문에 합의의 대상을 '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로 기재하고, 2항에 원고 회사가 E 무효심판을 취하하는 즉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무효소송의 파기환송심인 2013허9614를 취하하는 것을 추가하며, 4항에는 '대상특허(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부제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된 합의서 초안을 회신한 사실, ③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10. 16. 피고에게, 피고의 수정 합의서 초안에 대하여, '부제소 범위를 대상 특허로 한정하면 국외에 등록된 특허가 대상 특허와 꼭 일치하지 않고 부제소 합의의 실질적 효력이 의문이 있으니 부제소 범위를 '대상특허 및 합의서 체결일 현재 국내/국외 등록되어 있는 ceramic coating 분리막기술과 관련하여'와 같이 수정하자고 제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을 이 사건 특허 외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관련된 기술 전반으로 보고, 부제소 의



무도 위 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것으로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을 이 사건 특허 분쟁으로 하고, 부제소 의무 부과 대상도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고자 하였던 사정이 추인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정과정을 거친 후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원고 회사로서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특허만이 이 사건 합의, 특히 부제소 의무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소취하절차이행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화
	판사	이태웅
	판사	박태일



별지 1.

목 록

1.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사건번호:) 중 미국 특허 , 및 의 침해에 대한 조사신청 부분
2.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사건번호: DED 1:19-cv-01805) 중 미국 특허 , 및 에 대한 침해금지 등 청구 부분



: 2020-09-08

별지 2.

1) 발명의 명칭 : L

2) 출원일/출원번호 : M / N

(우선권 주장 : 2004. 12. 22. / O, P)

3) 등록일/등록번호 : Q / D

* 발명의 상세한 내용, 개별 청구항 등은 이 사건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별지 3

일자	사실관계	증거
2010. 9월경	대통령의 [] 2차 전지가 장착된 [] 제조 전기차([]) 시승 / [] (원고 []의 전신)의 임직원들이 [] 임직원들과 함께 국산 전기차 [] 시승행사를 하고, []와 협력 관계를 강화함.	감 제13호종의 1 내지 5 각 신문기사
2011. 1. 26.	피고는 원고 []가 전기차 장착용 2차 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중대형 전지 및 이에 포함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합니다)이 분쟁 대상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감 제22호종 경고장 (2011. 1. 26.)
	서, 원고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 []가 피고의 2차 전지 알크재, 셀구조 등에 관한 다수의 특허권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2011. 12. 3.	피고는 원고 []를 상대로 분쟁 대상특허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0851) * 피고는 소장 제14면에 '원고 []가 2010. 9월경부터 []의 전기차 모델인 []에 적용하기 위하여 2차 전지 제품을 []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가 원고 []의 []의 []에 대한 2차 전지 판매를 크게 의식하는 모습을 드러냄.	감 제5호종 감 제23호종 소장 (2011가합130851)
2011. 12. 20.	원고 []는 피고를 상대로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제기(특허심판원 [])	감 제6호종의 1
2012. 8. 9.	원고 []의 특허무효심판청구 승소(특허심판원 []) : 분쟁 대상특허 무효	감 제6호종의 1
2012. 9. 3.	피고는 특허심판원 심판 사건에서 패소하고, 특허법원에 위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특허법원 2012허8188)	감 제6호종의 2
2013. 4. 11.	원고 []의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 승소(특허법원 2012허8188) : 분쟁 대상특허 무효	감 제6호종의 2
2013. 4. 23.	피고는 특허법원 패소 판결에 상고를 제기함(대법원 2013후884)	감 제6호종의 3
2013. 5. 24.	피고는 특허법원 소송 사건에서 패소하고,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를 한정하거나, 감축하는 특허정정 심판을 제기함(특허심판원 [])	감 제24호종 심결문 (특허심판원 [])
2013. 5. 27.	특허청의 중재로 원고 []와 피고 사이의 화해 협의 : 원고 []는 피고의 소송제기에 대한 보상 요구, 분쟁 대상특허는 무효가 될 것이고 원고 []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 / 피고는 분쟁 대상특허를 포함한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제공 제안	
2013. 6. 14.	피고의 협의 제안에 따른 원고 []와 피고 사이의 화해 협의 : 피고는 분쟁 대상특허의 정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 / 원고 []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	
2013. 6. 18.	피고의 협의 제안에 따른 원고 []와 피고 사이의 화해 협의 : 피고는 분쟁 대상특허를 포함한 다수 특허의 크로스라이선스를 제안하고, 원고 []의 요구조건 제안 회망 / 원고 []는 피고의 추가적인 양보 및 공식적 사과를 요구	



: 2020-09-08

일자	사실관계	증거
2013. 9. 24.	특허심판원의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정정심판 인용(특허심판원 []))	갑 제24호증
2013. 10. 11.	원고 []가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정정무효 심판 청구(특허심판원 []))	갑 제16호증의 2 특허심판 정보([])
2013. 11. 14.	대법원이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결정을 이유로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을 함(대법원 2013후884)	갑 제6호증의 3
2013. 12. 6.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특허법원에서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이 계속됨(2013하9614)	갑 제16호증의 1 사건경색(2013하9614)
2014. 2. 21.	원고 []의 분쟁 대상특허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0851)	갑 제5호증
2014. 3. 12.	피고가 전부 패소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법 2014나16472)	갑 제16호증의 5 사건경색(2014나16472)
2014. 4. 22. ~ 2014. 4. 29.	피고의 합의 제안에 따른 원고 []와 피고 사이의 화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사과를 표명하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향후 상호 부제소 방식의 합의를 요청 - 원고 []는 피고의 화해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기한 소송을 먼저 취하할 것을 요구함 	
2014. 4. 30.	피고가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항소 취하(서울고법 2014나16472)	갑 제16호증의 5
2014. 6. 11.	원고 []의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정정무효심판 청구 기각([]))	갑 제16호증의 3 심결문([]))
2014. 7. 11.	원고 []가 특허법원에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정정무효 청구(2014하4698)	갑 제16호증의 4 사건경색(2014하4698)
2014. 8.경	원고 []와 피고 사이의 화해 협의 : 당사자들은 CEO 명의로 합의하고, 2차 전자 분리막 분야에서 10년 간 상호 부제소하기로 함	
2014. 10. 29.	원고 []와 피고는 분쟁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 / 국외를 방문하고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정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갑 제7호증
2014. 10. 30.	피고가 특허법원에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 청구 취하(2013하9614)	갑 제16호증의 1
2014. 10. 30.	원고 []가 특허법원에 분쟁 대상특허에 대한 정정무효청구의 소 취하(2014하4698)	갑 제16호증의 4



별지 4. 이 사건 특허 관련 해외특허 현황

국가	특허번호 / 사건	등록일 / 합의일
한국	<input type="text"/> ('대상특허')	
대만		
미국		
중국		

국가	특허번호 / 사건	등록일 / 합의일
유럽		
일본		
유럽		
이 사건 합의		
일본		



: 2020-09-08

별지 5

[원고 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내역]

지급일	지급 금액(단위:달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증거
2019-11-29	668,105.34	811,747,988	갑 제30호증의 1 <input type="text"/> 청구서(20191129)
2019-12-20	881,482.94	1,071,001,772	갑 제30호증의 2 <input type="text"/> 청구서(20191220)
2020-01-30	972,560.64	1,181,661,177	갑 제31호증의 1 <input type="text"/> 청구서(20200130)
2020-02-27	1,574,994.57	1,913,618,402	갑 제31호증의 2 <input type="text"/> 청구서(20200227)
2020-03-26	1,263,507.97	1,535,162,183	갑 제31호증의 3 <input type="text"/> 청구서(20200326)
합계액	5,360,651.46	6,513,191,523	

끝.